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(안) 제안 설명

이 병 두 의원입니다.

『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(안)』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○ 제안이유는,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,
- 조례중 지방의회등의 명칭을 인적·장소적 효력범위가 명확한 용어로 정비하며,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의원일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조정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.

○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,

첫째, 위원의 정수를 5인이내에서 10인이내로 하되, 도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총수의 1/3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며,

둘째, “지방의회”를 “충청북도의회”로 하고,
셋째,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“50,000원”을 “의원일비와 동일한 금액”으로 조정 하며,
넷째, 본 조례가 충청북도 조례로 존치되어 있는 것을 의회조례로 변경코자 하는
것입니다.

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